

경제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)라 칭하며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,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제반 연구 활동의 수행을 통해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본 대학교의 면학분위 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경제전반에 대한 연구사업
2.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
3.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
4. 논문집 발간
5. 지역 내 학교간의 유대 강화에 필요한 사업
6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 4조 (연구소 요원) ①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정의 연구원, 기능 및 행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연구소 요원의 자격, 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5조 (임원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, 약간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둔다.

②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인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5.09.01)

③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6조 (임원의 직무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, 인사, 경리 및 기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3 장 자문위원회

제 7조 (자문위원회) ① 연구소의 주요 정책 및 사업성과에 관한 자문 및 평가들을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 8조 (구성 및 회의)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,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9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조직, 운영체제 및 기본계획 수립
2. 연구방향 설정
3. 주요 사업 과제 선정 및 조정
4. 연구소 운영규정
5. 예산 및 결산
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 장 재 정

제10조 (재원) 연구소의 재원은 각종 지원금, 연구비 또는 이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 (예산 및 결산)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 (예산집행) 예산의 집행은 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, 년 1회 감사를 받는다.

제13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28일에 종료한다.

제14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
제 6 장 보 고

제15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7 장 보 칙

제16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17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